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1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완화	2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6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
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 완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요양급여로서 간병을 추가하고, 간병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제41조(요양급여)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8. 간병</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u> <u>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¹⁾하게 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²⁾,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전년 대비 상승률³⁾은 2020년 2.7%에서 2023년 9.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3년 4월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에 달하였고,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의2⁴⁾에 근거하여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

1)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2024. 12. 24.자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2023. 12. 21.

3)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 ('20) 2.7% → ('21) 6.8% → ('22) 9.2% → ('23) 9.3%

4)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⁵⁾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는 2021년 약 194만명에서 2025년 약 288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환자 수	1,944,493	2,041,684	2,466,537	2,646,663	2,877,8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53.7%로 나타나고 있으며, 병상 대비 참여율은 35.3%로 나타나고 있음.

<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25.12) >

(단위: 개소, 병상, %)

구분	기관			병상		
	참여대상	참여	참여율	참여대상	참여	참여율
계	1,532	822	53.7	251,047	88,736	35.3
상급종합병원	47	47	100.0	41,889	9,376	22.4
종합병원	329	299	90.9	96,883	45,358	46.8
병원	1,156	476	41.2	112,275	34,002	30.3

자료: 보건복지부

5)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는 것으로,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인건비를 지원(본인부담률 40~50%)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24.4 신규사업)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 최고도·의료고도 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	본인부담률 40~50% 전제, 간 병비 인건비* 지원 * 월 급여 258만원, 퇴직금 및 보험료 54만원	「보건의료 기본법」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 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 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 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 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 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 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⁶⁾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인 등에 대한 간병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⁷⁾이 있고,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바, 간병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간병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안 제44조의2는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

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7)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계획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시 간병비 300만원, 본인 부담률 30%를 책정하면 4년간(2027~2030) 약 5.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86호, 김선민의원 대표발의)⁸⁾에 대하여 법제처는 하위법령⁹⁾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부담액을 차등하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경감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 나머지 요양급여와 달리 간병에 대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086호,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이하 이 조에서 “간병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 9)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서 생략)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이하 생략)

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¹⁰⁾

< 간병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

연 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	발의 일자	관련조문	대상	주요내용
1	86	김선민 의원	2024. 6.3.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병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2	100	이수진 의원	2024. 6.3.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3	296	박희승 의원	2024. 6.11.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제41조의6(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기요양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등의 간병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4	381	이용선 의원	2024. 6.12.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및 제42조(요양기관)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5	742	서영교 의원	2024. 6.20.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 차상위계층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등의 간병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6	1512	박지혜 의원	2024. 7.9.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 70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차상위 계층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70세 이상 노인 대상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10) 참고로,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1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8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0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0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12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19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20호)」

연 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	발의 일자	관련조문	대상	주요내용
7	2922	한병도 의원	2024. 8.9.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건강 보험에서 간병비용 지급
8	7358	강선우 의원	2025. 1.8.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8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제44조의2(간병에 대한 특례)	- 소득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년 간병 특례 마련(본인일부부담금 공단 지원)
9	7805	황정아 의원	2025. 1.24.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 70세 이상인 가입자· 피부양자	- 70세 이상 입원기간 중 간 병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10	12215	전종덕 의원	2025. 8.18.	제41조(요양급여) 제1항제6호	-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고로, 2024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료급여법」 소관)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소관)에 서는 위 개정안들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2024년 12월로 예정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중간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대상이 제한적(20개소)이었고, 이번 정부 국정과제가 간병비 급여화를 요양병원 재구조화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범사업과 달라,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¹¹⁾을 통해 환자와 요양병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후 본수가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참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개요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간병 취약 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의 경우, 다른 요양급여와의 형평성 및 의료비 지원제도(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등)와의 정합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법체계상으로도 법률에 요양급여별로 별도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를 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하기 위해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간병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포함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 및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간병의 급여화 및 취약계층 대상 특례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보험 재정의 부담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방안,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제공자,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요양급여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대한의사협회

-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고 향후 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4년 4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기존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을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이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희귀질환이나 중증 암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요양급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 '25.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확정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의료역량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100%→30% 내외)
- * 대상 환자 규모를 '30년 기준 8만 명으로 추정해 10만 병상 필요 (확보 병상 수에 따라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규모 500개소 변동 가능)
- '25.9월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 준비 현황

-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월 1~2회 정기적 운영, '25.10월~)
 -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및 간병 급여화 대상환자 인정기준 등 논의
- 적정 본인부담을 위한 간병수가 및 본인부담률 검토 중

□ 재정소요추계

※ 간병비 300만원, 본인부담률 30% 책정 시 소요재정

- 4년간('27~'30) 건강보험 재정 5.37조 원 소요(간병비+지불조정)

* 간병 수가, 수가조정과 성과보상, 수가체감, 본인부담률 수준 및 사회적 입원 감소 수준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 가능

구분	27	28	29	30	4년 누적
간병비 지원	3,700억 원	1.1조 원	1.1조 원	1.6조 원	4.17조 원
수가인상 (정액+성과)	2,000억 원	3,000억 원	3,000억 원	4,000억 원	1.2조 원
계	5,700억 원	1.4조 원	1.4조 원	2조 원	5.37조 원

□ 향후계획

- ('26.3분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26.4분기) ^{가칭}의료중심 요양병원 공모 및 선정
- ('27.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행

자료 : 보건복지부